

프랑스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최근 쟁점

Anne Eydoux

(Université Rennes 2, 경제학과 교수)

■ 개요

프랑스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즉 PES는 여러 기관들과 운영자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단편적이며 복잡하다. 프랑스 PES는 유럽에서 가장 단편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실업수당을 각각 ANPE,¹⁾ AFPA,²⁾ UNEDIC³⁾가 별도로 맡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사회통합부⁴⁾에서 전반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 시행을 관장한다. 둘째, 위에 명시된 기관들은 지방분권화 과정과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 조직 및 결정과정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 셋째, ANPE가 구직 서비스를 이론상으로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 및 민간 운영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구직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프랑스 PES의 단편성 및 복잡성은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결정과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성격에 따라 서비스 운영 기관들 사이에 제휴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노동시장정책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1) 먼저 프랑스 PES의 기본 조직과 구직자들 및 기업주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논하고, (2) 그 다음, 프랑스 PES의 복잡화 및 단편화에 영향을 미친 지방분권화, 기관간 제휴와 협력 강화

1)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프랑스국립고용청
 2) Association nationale po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s adulte: 프랑스국립직업훈련협회
 3) 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프랑스 산업간 노조
 4) Ministry of employment, labor and social cohesion: 2004년 4월 이전에는 사회문제·노동·연대부.

[표 1] 프랑스 PES와 관련 기관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실업수당
기관 / 국가단위	노동부 DGEFP(1997)	ANPE (1967) (노동부 소관 국립고용청)	AFPA(1949) (노동부 소관 노 사정 3자 조직)	UNEDIC (1958) (노사가 공동 관 리하는 시스템)
역할	고용 및 직업훈 련에 관한 공공 노동 시장 정책 의 결정, 실행 및 관리	기업들에게 인력 소개 및 재분류 지원 제공 구직자의 등록관 리 및 노동시장통 계 관리	직업훈련, 직장 안 내 및 인적 자원 자문	실직자 등록 보험체계관리 단일 수당지급기관 (보험 및 '연대' 수당)
지역단위	DDTEFP(1992), DRTEFP(1995)	ALE	지방 AFPA 기관 들	ASSEDIC 기관들

및 소위 말하는 “외부” 서비스 제공 기관들
에게로의 업무 위임 확대와 같은 최근 발전
상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3) 마지막으로,
PES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이를 위
해 필요한 공적 독점의 종식 및 PES 고용정
책의 운영과 같은 개혁에 관해 조명한다.

■ 프랑스 PES의 기본 조직 및 서비스

프랑스 공공 고용서비스는 해당 행정부와
ANPE, AFPA와 같은 국가 기관들이 담당하
고 있다. 이 기관들은 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을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역할
을 한다. UNEDIC는 수당 지급 기관으로서,
노사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자
등록과 ANPE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 고용서
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서비스 제공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들은 프랑스 노동부와 노사단체들이다. 더욱
최근에는, 지방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⁵⁾도 이에 가세하게 되었다.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유
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을 통하여 프랑스의 정책 형성에 점점 더 많
은 기여를 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 PES의 기본 조직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새롭게 마련된 구직자 지원 프
로그램(PARE)⁶⁾과 개별화된 행동 프로젝트
(PAP)⁷⁾를 통해 현재 구직자와 기업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본다.

기본 조직

노동부(국가 차원에서는 DGEFP⁸⁾와 지역
차원에서는 DRTEFP⁹⁾와 DDTEFP¹⁰⁾가 있

5)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6) Plan d'aide au retour à l'emploi.

7) Projet d'action personnalis.

8) Direction générale à l'emploi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National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9) Direction régional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 Regional office for lab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10) Direction départementale du travail, de l'emploi

음)가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공공 노동시장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DGEFP와 DDTEFP는 ANPE와 UNEDIC/ASSEDIC¹¹⁾와 함께 구직 현실을 모니터 및 관리하며 실직자에게 실업수당 혜택 제공을 일시적 또는 완전하게 중지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ANPE는 국가 고용청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중개자로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ANPE는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알선 및 재분류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노동부 산하의 공공 기관이다. ANPE는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맞춰주고, 구직자에게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려, 안내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력모집과 직원 재분류 과정을 도와준다. ANPE는, 또한 구직자들의 등록을 담당하고, 노동시장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지만, 수당 지급 기관은 아니다. 사실 프랑스 실업수당 체계는 UNEDIC 소관의 보험과 국가가 관리하는 소위 '연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이중 체계이다. 그러나 수당 지급은 UNEDIC가 단독적으로 담당한다.

AFPA는 직업훈련, 직업안내 및 인적자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AFPA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정보, 평가, 안내 및 적절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AFPA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 Département (French administrative district) office for lab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11)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 Association for employment in industry and trade.

는 노동부 소관이며 노사정 삼자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PES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PARE/PAP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PARE/PAP 프로그램 내의 서비스

UNEDIC는 2001년 7월 1일, PARE/PA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프랑스 고용안정서비스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도했다. 동 프로그램은 무이자 대출의 활성화와 개별화된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실업자 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PARE는 고용복귀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가입 실업자들의 불과 20%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종전의 프로그램과 달리, 보험 또는 연대 프로그램에 가입된 모든 실직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시에, ANPE가 실시하는 개별화된 행동 프로젝트, PAP는 모든 구직자를 위한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1년 7월 이후, UNEDIC와 PARE에 가입한 모든 등록 구직자들은 ANPE와 계약된 PAP내에서 "구직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계약 제1조)." ASSEDIC에 구직 등록을 한 후 실직자는 한 달 내에 지방 ANPE 기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해 실직자는 자신의 자격조건에 상응하는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재분류 작업에 대해 검토하며, 자신의 직업훈련 선호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실직자에게 적합한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 직업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후 PAP는 수당 수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빨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직자 개개인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6개월 후 구직자가 ‘적절한’ 일자리¹²⁾를 찾지 못했을 경우, ANPE는 PAP를 최근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정확한 직업능력평가를 제안할 수 있다. 12개월 후에도 만약 실직자가 여전히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ANPE는 실직자를 위한 재분류 및 직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ASSEDIC는 지역 수당 지급기관으로서, 수당을 받는 실직자가 어떠한 구직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PARE 프로그램은 또한 UNEDIC가 보험에 가입한 장기 실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소위 말하는 ‘줄어드는 보조금’)와 직장 이동성 또는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PARE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에 있어서 UNEDIC의 역할은 국가, 기업 및 지방정부와 함께 직업훈련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대 변화되었다. UNEDIC는 근본적으로 구직자의 노동시장 재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의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PARE/PAP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이

12) 적절한 일자리란 해당 개인의 기존 전문기술 및 훈련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구직자의 개인·가족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표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일자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노동법전 351-17조 R.311-3-5, R.351-28).

자 지출의 활성화와 실직자의 구직활동 촉진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서, UNEDIC는 ANPE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개발에 있어서 더욱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EDIC는 실직자들의 절반에게만 실직수당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직수당 제공 범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더욱이 PARE/PAP는 2000년, 경제성장(연평균 3%), 고용창출(연 5만~6만명)과 실업률(3년 내에 30% 하락)에 관한 높은 기대에 기초하여 노사단체들에 의해 도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경제 둔화 및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이 발생했고, 그 결과 ANPE는 현재 PAP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특히 장기 실직자와 같이 지원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Tuchszirer 2003).

■ 고용서비스의 복잡화 및 단편화

프랑스 PES는 실제적으로 국가적·지역적·지방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여러 종류의 기관들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분권화, 기관간 제휴·협력 강화와 ‘외부’ 운영자들에게로의 업무 위임 증대와 같이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조직의 복잡화 및 단편화 경향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공공 고용정책 및 서비스의 분권화

1980년대 초부터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및 정책의 지방분권화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취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특히 직업훈련 시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행정지역 단위인 ‘부(department)’는 사회부조 및 사회정책을 시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지방 정부는 경제개발과 지역 참여단체간의 의견 조율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PES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시도된 탈중앙 집권화, 즉 지방분권화정책은 1980년대 ‘외부 운영기관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1996~99년에 지역 실정에 기반한, 지역 차원에서 운영되는 7개 고용정책 방안(CES, CEC, SIFE, CEV, SAE, CIE)을 마련한 것이었다. 또한, ANPE와 그보다 규모가 작은 AFPA와 같은 공공 운영기관들이 조직적 지방분권화 과정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실정을 한정적으로만 고려하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지역 참여단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며, 좀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Marimbert 보고서(2004)¹³⁾에서 강조된

것처럼, 지방분권화는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PES 기관들 사이에서 지방분권화 과정과 수준은 동일하지 않았으며, 지역마다 서로 다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간 제휴·협력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자의 직장 이동성 또는 고용의 질과 같은 일부 고용 문제들은 지역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다. 또한 국가 고용정책의 전체적인 일관성은 지역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국가 목표 및 우선사항과 연계되어 있다.

ANPE, AFPA와 UNEDIC 사이의 협력 강화와 업무 분할

프랑스 PES 기관간 협력강화와 업무 분할상의 변화가 도입되면서, 지방분권화가 진행되었다. Marimbert 보고서(2004)에 따르면, ANPE와 AFPA 사이의 조직적 차원의 협력은 1990년 말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이후, 구직자들에게 좀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PNAE)의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 ANPE는 직장 안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평가를 위해 AFPA와 손을 잡았으며¹⁴⁾, 상호 보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양자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ANPE와 AFPA 기관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종종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자간 협력으로 인하여 AFPA가 맡게 된 구직자의

13) (편집자주) 현재 PES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프랑스 노동계의 주요 이슈로 진행중인데, 2004년 봄 노동법 및 정책 개혁을 목적으로 노동부가 2003년 말 부터 Virville 보고서, Marimbert 보고서(<http://www.travail.gouv.fr/pdf/rapMarimbert.pdf> 참조), Balmari 보고서 등 일련의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2004년 1월 발표된 Marimbert 보고서는 공공고용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부의 실업자 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고, 2003년 12월 발표된 고용정책과 외부 기관 활용에 관한 보고서인 Balmari 보고서와 더불어 공공 취업알선 기관들이 외부 운영기관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14) AFPA의 ANPE 업무는 1999년 40%에서 2002년 62%까지 늘어났다.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더 많은 기간을 대기해야 했다.

같은 방식으로, ANPE와 UNEDIC 사이의 조직적 협력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ANPE와 UNEDIC는 1980년대 초부터 구직자 등록과 데이터 베이스 공유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더 최근에는(1996~97년) 양자 협력으로 인해서 구직자 등록 업무가 ANPE에서 UNEDIC로 이전되었다.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제휴관계는 2001년 이전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일부 '활성화(재분류)'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PARE/PAP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과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전례가 없는 조직적 협력(Marimbert 2004)'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적 요구 및 니즈의 평가와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직업능력 훈련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조직적 협력 확대에 기여를 했다. 양자간 협력 증대는 구직자의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 2001년 이후 ASSEDIC 또한 ANPE 지역 기관들과 함께 DDTEFP에게 벌칙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된 변화로 인해 고용 서비스와 정책 목표의 일관성에 관해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ANPE와 UNEDIC의 협력이 실직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에 목적이 있는 반면, AFPA는 구직자의 직업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곧 질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좀더 감안한다는 의미에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으로, AFPA의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AFPA는 좀더 어려운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는 실직자들은 내버려 두고, 직업훈련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구직자들에

게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일관성 문제는 '외부' 운영기관들에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외부 운영기관에의 의존 심화

198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의 고용 프로그램은 점점 더 공공 및 민간(영리 및 비영리 기관 모두) '외부' 운영기관들에 더욱 의존해 왔다. Balmary 보고서(2003)¹³⁾에 따르면, 7억 유로 이상이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외부 운영기관들에게 제공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명시적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신속하게 다양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부가 맡고 있는 많은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행정적 책임을 제한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ANPE가 특정 '외부' 운영기관들에게 위임한 서비스 업무 중에 일부는 구직자 대상 그룹에 관한 것이다.

중역 및 매니저급의 일자리 알선

APEC은 1966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중역 및 매니저급의 재분류 및 직무 예비지도와, 기업주에게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ANPE와 APEC 기관들간의 지역적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제휴는 특히 2001년 이후 강화되었으며 또한 PARE/PAP 프로그램도 실행되었다.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알선

1982년에 설립된 '지역 파견단체들' 즉,

PAIO¹⁵⁾는 사회참여 및 직업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실직 청년들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ANPE와 ‘지역 파견단체’ 사이의 협력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2001년에 PARE/PAP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되었다.

장애근로자의 일자리 알선

1988년에 설립된 AGEFIPH¹⁶⁾는 CAP 고용 네트워크로서 장애근로자들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또한 기업지원 활동을 한다. AGEFIPH는 1990년 대 초부터 활발히 협력해 왔고, 2001년 이후에는 양자간 협력이 한층 더 확대되었다.

PARE/PAP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업무의 위임이 가속화되었고, 개인화된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ANPE는 특히 대상 그룹들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외부’ 운영기관들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 위임은 양적 목표가 명시되어 있는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 PES의 현대화 및 관리의 문제점

1998년 이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유럽고용전략(EES)에 따라 PES를

15) Missions locales -Point accueil information orientatio (Advice, information and guidance center).

16) Association de gestion du fonds pour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 Association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disabled workers' employment fund.

현대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PES의 점차적인 독점 종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집행위원회는 PES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여타 영리 및 비영리 운영기관들의 역할 및 업무 성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집행위원회는 PES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공공기관들과 민간기관들 사이의 경쟁확대 가능성 및 비용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의 개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 네덜란드, 영국 같은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최근 주요 노동시장제도의 개혁안을 채택하고, 외부 기관 참여 및 경쟁 도입을 시도했다(Balmary(2003), Freyssinet(2004), Simonin(2004) 예정).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몇 가능한 변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두 가지 보고서는 PES의 과거의 변화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다루고 있다. Balmary 보고서(2003)는 PES의 ‘외부’ 운영기관 의존에 대한 검토를 했으며, Marimbert 보고서(2004)는 UNEDIC와 ANPE 사이의 조화로운 업무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했다.

ANPE의 법적 독점의 종식

프랑스에서 직업소개에 관한 ANPE의 독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2003년 가을, 독점을 종식시키고 직업소개서비스 분야에 민간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Marimbert 보고서(2004)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동 보고서가 공공 기관의 독점을 종식시

키기 위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의 공공 고용안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공적 운영기관들과 민간 기관들 사이에 사실상의 경쟁에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독점의 공식적 종식은 '중전에 제한되었던 자유로운 이니셔티브와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는 신호탄과 같았다(p.p.125~126).

그러나 공공기관의 독점은 구직자를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에 관한 PES의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Freyssinet 2004b). 다양한 직업소개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 사이에서 경쟁이 효율적이라면, PES의 책임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실직자들 사이의 불평등과 노동시장 세분화를 심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민간 운영기관들은 가장 '고용 가능성이 큰' 구직자만을 선택하고 그 외 구직자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관리 문제

프랑스에서 고용정책의 결정은 국가의 책임이다. 물론, 국가는 일부 고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임할 수 있고 PES를 위해 '외부'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참여단체들과 정책의 증대로 인해 고용정책과 PES의 업무 집행 및 관리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고용 서비스 제공 기관들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 이외에, Marimbert 보고서(2004)는 고용정책과 PES의 운영에 관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초래되고, 시간과 에너지, 자원이 낭비되며, 수익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또한 동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의 체제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ANPE와 UNEDIC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제도의 간소화와, 둘째 운영기관들 사이의 제휴·협력의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동 보고서는 '운영의 개선만이 방법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사회단체 및 지방정부와 같은 참여 기관들은 고용정책과 PES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한 제도상의 간소화를 거부하려 할 것이며, 둘째, 제도상 복잡성은 다양한 대중의 요구에 좀더 잘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직업소개와 재분류를 위한 제도의 현대화나 시장경쟁 확대의 모색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와 전략, 협력과 제휴의 확대를 통한 운영개선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나, Freyssinet 보고서(2004b)에 나타나 있듯이 '진단의 명확성'은 '제휴·협력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Balmay D. (2003), “Politique de l’emploi et recours à des opérateurs externes”, *Rapport de l’instance d’évaluation présidée par Dominique Balmay*, Conseil national de l’évaluation, 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décembre.
- Commission européenne (1998), «Moderniser les services publics de l’emploi pour soutenir la stratégie européenne pour l’emploi», communication 641.
- Freyssinet J. (2004a), “Balmay, Marimbert, de Virville: trois rapports… et un enterrement, ou BMV, le moteur de la politique de l’emploi?”, *Note Lasaire*, n°4, mars.
- Freyssinet J. (2004b) “Politique de l’emploi: les conditions de la gouvernance”, *Connaissance de l’emploi, le 4 pages du Centre d’Etudes de l’Emploi*, mars.
- Malinvaud, E. (2003) «Réformes structurelles du marché du travail et politiques macroéconomiques», *Revue de l’OFCE*, n°86.
- Marimbert J. (2004) *Rapport au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sur le rapprochement des services de l’emploi*, avec le concours de B. Joly, janvier, 232.
- Sénat (2004) «L’organisation de l’indemnisation et du placement des chômeurs», Les documents de travail du Sénat, série Législation comparée, n°LC 130, janvier, 53 pages.
- Simonin B. (2004) «Services public de l’emploi et opérateurs privés. Quelles réformes dans les pays voisins?» *Connaissance de l’emploi, le 4 pages du Centre d’Etudes de l’Emploi*, avril (à paraître).